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[별표 5의3] <신설 2024. 7. 23.>

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

(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시·도지사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.

가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

나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입찰참가 제한기간	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
가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		
1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		2년	공사비의 100분의 20
2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		2년	공사비의 100분의 15
3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		1년	공사비의 100분의 10
4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		1년	공사비의 100분의 5

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			
나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		
1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		2년	공사비의 100분의 20
2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		2년	공사비의 100분의 15
3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		1년	공사비의 100분의 10
4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		1년	공사비의 100분의 5
다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·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		
1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		2년	공사비의 100분의 20
2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		2년	공사비의 100분의 15

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			
3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		1년	공사비의 100분의 10
4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		1년	공사비의 100분의 5